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행정자치위원회 송재혁 의원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6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재혁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서도 이미 시장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후예산제(감축, 배출, 혼합, 중립) 운영을 통해 예산 및 사업의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여부를 판단하고, 집행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며, 결산 단계에서 예산의 집행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예산제를 통해 확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민의 이해도와 효능감 제고를 위하여 법령에 근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용어를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기후예산제’로 제명하였습니다.

둘째, 기후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조)

셋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축지표, 대상사업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의 과정에서 기후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시장의 책무

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넷째, 기후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예·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안 제4조)

다섯째, 기후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여섯째, 기후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을 위해 기후예산제의 운영 성과 평가, 예산제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일곱째, 시의회 의원,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여덟째, 기후예산제 시행을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아홉째, 시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기후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또는 지원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열째, 기후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진사업의 성과 등을 시민이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열한째, 기후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예·결산서의 평가·분석 등의 사무처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열두째, 예산편성 시기 등을 고려하여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하였습니다. (부칙)

아무쪼록 제정된 조례안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견인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